## 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송재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076 발의연월일: 2020. 9. 21.

발 의 자: 송재호·김용민·맹성규

박성준・송옥주・신정훈

양정숙 • 윤미향 • 이상직

이성만 · 이용빈 의원

(11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5·18 유공자 또는 관련자에 관한 법률은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(이하 '5·18유공자법')과 「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'5·18보상법') 등으로 나뉘어 있음. 5·18유공자법은 제5조에서 유족 및 가족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, 5·1 8보상법은 제2조에서 유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, 「5·18유공자법」제5조에서는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서도 그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으나, 「5·18보상법」 제2조는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인으로 유족을 한정하고 있어 사실혼 배우자가 유족에서 누락되고 있는 상황임. 이와 관련하여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에도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관련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도 보상금과 생활지원 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인정되는 배우자에 포함함으로써 사실혼 배우 자의 재산권과 복리를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2항 및 제3항).

# 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, 관련자의 유족 중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. 다만,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관련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관련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.

다만, 제2항에 따른 관련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「민법」에 따른 배우자의 재산상속분으로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관련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의 권리 공유에 관한 적용례)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되는 보상금·생활지원금 부터 적용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유족의 범위 등) ① (생	제2조(유족의 범위 등) ① (현행
략)	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, 관련자
	의 유족 중 배우자의 경우 사
	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
	한다. 다만, 배우자 및 사실혼
	관계에 있는 사람이 관련자와
	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관련
	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
	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
	제외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은 「민	<u>③</u>
법」에 따른 재산상속분에 따	
라 이 법에서 정한 보상금과	
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를	
공유한다. <u>&lt;단서 신설&gt;</u>	<u>다만, 제2항에 따른 관</u>
	런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
	람의 경우에는 「민법」에 따
	른 배우자의 재산상속분으로
	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
	을 권리를 공유한다.